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6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기덕, 김인제,
박칠성, 봉양순, 왕정순,
이민옥, 이병도, 이영실,
이원형, 임만균, 전병주,
정준호, 최기찬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에 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함. (안 제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직선거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의원들”을 “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의회는 소속 <u>의원들이</u>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</u>----- ----- -----.</p>

문서 번호

2023101200000022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김경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2.

회신일 : 2023.10.16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 제3항의 ‘의원’ 을 ‘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’ 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같은 조례안 제3조제3항의 ‘의원’ 에 ‘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’ 을 포함할 경우 ‘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’ 하는 범위는 같은 조례에 근거한 다른 조례(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등)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상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박지영
	☎ 02-2180-7952
	e-mail : 7magic7@seoul.go.kr